
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14187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. 11.

제안자 :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명	대표발의자	발의일자	심사경과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7666호)	김선교의원	2025. 1.21.	제424회국회(임시회) 제2차 전체 회의(2025.4.23.) 상정 후 제안설 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7761호)	서천호의원	2025. 1.23.	제424회국회(임시회) 제2차 전체 회의(2025.4.23.) 상정 후 제안설 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

가. 제429회국회(정기회)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9.29.)

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각
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.

나. 제429회국회(정기회)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(2025.9.

30.)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
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해양수
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
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업종별수협 해산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현행 15인에서 수산물가공수협 최소 조합원 수와 동일한 7인으로 완화하는 한편, 과거 지구별수협 최소 조합원 수 기준이 개정되면서 함께 정비되지 못한 준용규정의 오기(誤記)를 수정하려는 것임(안 제108조 및 제113조).

법률 제 호
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8조 후단 중 ““200인 미만”은 “15인 미만”으로”를 ““100인 미만”은 “7인 미만”으로”로 한다.

제113조 후단 중 “200인 미만”을 “100인 미만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호·제4호”는 “제107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”로, 제47조제4항제1호 중 “제60조제1항제2호”는 “제107조제1항제2호”로, 제47조제4항제2호 중 “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”는 “제107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”로, 제60조제3항 중 “제1항제3호”는 “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”로, 제60조제4항 중 “제1항제8호”는 “제107조제1항제6호”로, 제60조제5항 중 “제1항제7호 및 제8호”는 “제107조제1항제6호”로, 제60조제8항제2호 중 “제1항제2호”는 “제107조제1항제2호”로, 제60조의2제1항 중 “제60조제1항제4호”는 “제107조제1항제3호”로, 제63조제1항 중 “제60조제1항제2호나목”은

제113조(준용규정)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, 제21조, 제22조, 제22조의2, 제22조의3,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, 제51조의2, 제52조, 제53조, 제53조의2, 제53조의3,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, 제60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,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, 제60조의2, 제60조의3, 제60조의4, 제61조제2항, 제62조,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(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)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16조 제1항 중 “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”은 “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람 7인 이상”으로, 제47조제3항제1호 중 “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”는 “제112조제1항제3호 및 법률

제113조(준용규정) -----

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
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”로, 제47
조제3항제2호 중 “제60조제1항
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
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·
제4호”는 “제112조제1항제6호
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
사업 중 같은 항 제3호 및 법
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
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”로, 제4
7조제4항제1호 중 “제60조제1
항제2호”는 “제112조제1항제2
호”로, 제47조제4항제2호 중
“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
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
은 항 제2호”는 “제112조제1항
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
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”
로, 제60조제3항 중 “제1항제3
호”는 “법률 제4820호 수산업
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
5조”로, 제60조제4항 중 “제1항
제8호”는 “제112조제1항제6호”
로, 제60조제5항 중 “제1항제7
호 및 제8호”는 “제112조제1항
제6호”로, 제60조제8항제2호 중

“제1항제2호”는 “제112조제1항제2호”로, 제60조의2제1항 중 “제60조제1항제4호”는 “제112조제1항제3호”로, 제63조제1항 중 “제60조제1항제2호나목”은 “제112조제1항제2호나목”으로, 제84조제4호 중 “<u>200인 미만</u>”은 “7인 미만”으로, 제102조 중 “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”는 “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”로 본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100인 미만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-